

고성군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96호)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3. 3. 18

고 성 군 수

나. 회 부 일 자 : 2003. 3. 19

다. 상 정 · 의 결 일 자 : 2003. 3. 26

총무위원회 상정 · 의결

2. 개정이유

- 새마을 장학생 자격요건중 우등장학생의 학업성적 규정사항에 대하여 현행 정원의 비례석차로 하는 대신 중등학교에서 발급하고 있는 성적증명서의 평가방법(기준)으로 하여 현실성 있게 개정함으로써 장학생 선발에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가. 우등장학생 학업성적 규정사항 개정(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우등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의 장학금 지급정지에 대해 학업성적 규정사항의 개정(안 제9조제1항제3호)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장학생 자격요건중 우등장학생의 학업성적 규정에 대하여 현행 정원의 비례 석차로 하던 것을 중등학교에서 발급하는 성적증명서의 평가기준으로 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함으로써 장학생 선발에 적정성을 기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규정을 보완 개정코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

5. 질의 및 답변 : 없음

6. 토 론 : 없음

7. 심사결과

○ 2003. 3. 26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